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보증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되,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통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 건전성 유지장치를 마련하고(영 16조의5 신설), 벤처기업 등 대상 직접투자는 투자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영 17조의7 개정),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의 한도를 삭제함으로써(영 16조의4 개정)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0.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는”을 “집합투자기구 및 조합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출자대상의 선정)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출자를 말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절차와 방법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사업주, 운용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정된 해당 사업에서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사업별 위험도, 국가별 위험도 등 시장위험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당 사업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해외 투자개발형 지분투자사업(국내기업이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투자하고 건설(EPC) 또는 운영(O&M) 등을 수행하는 해외 사업을 말한다)의 투자대상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7조의7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u>집합투자기구</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 ----- ---- <u>집합투자기구 및 조합 등</u> <u>은</u>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u>집합투자기구</u>	1. ----- ----- ----- ----- ----- ----- ----- ---- <u>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u>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u>	<u><삭 제></u>
<u><신 설></u>	<u>제16조의5(출자대상의 선정)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라 출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출자를 말하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절차와 방법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사업주, 운용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정된 해당 사업에서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사업별 위험도, 국가별 위험도 등 시장위험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당 사업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해외 투자개발형 지분투자사업(국내기업이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투자하고 건설(EPC) 또는 운영(O&M) 등을 수행하는 해외 사업을 말한다)의 투자대상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발생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u>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u>중소기업기본법</u>」에 따른 <u>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	
연 락 처	(044) 215 - 7612